

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	
			30일		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은 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)	전화번호			
신청 내용	[] 토양	파종·식재 예정지(토지 소재지)	토지 면적 (m ²)	파종·식재 예정 면적 (m ²)	파종·식재 예정 연월
	[] 종자 [] 종묘	종자·종묘 산지(토지 소재지)	신청량 (종자: kg, 종묘: m ²)		생산연월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전문기관의 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 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 사항	1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임야대장 1부 3. 임야도 1부 ※ 위 서류는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만 확 인합니다.	

처리절차

